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041
----------	------

발의년월일 : 2010. 4. 2.  
제안자 : 강문기 의원  
(찬성자 12인)

## □ 제안이유

- 가. 의안의 사전검토와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접수된 의안을 수시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 나.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수시 회부된 모든 의안의 위원회 심사는 회부일을 기준으로 10일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 다. 금년 7월부터 교육위원회가 시의회에 신설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제안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효율적인 시정 질문을 위하여 질문의원수를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라.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정비와 관련법 제·개정에 따라 장애인 방청허용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기한(회기시작 10일전) 규정을 삭제함.  
(안 제20조제2항)

- 나. 의안의 시행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20조제3항)
- 다.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 등을 위하여 각종 의안과 심사 보고서 제출시 전자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 (안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64조)
- 라. 수시 접수된 의안이 각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기간(10일)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22조의3)
- 마. 표결은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한 기명전자투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무기명투표 등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44조, 제46조 및 제50조)
- 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함. (안 제57조제1항)
- 사. 시정질문 의원수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안 제73조의2제3항)
- 아.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의 일부를 삭제함.  
(안 제86조제1항제3호)
- 자. 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소관 위원장이 본회의장의 예에 따라 운영하도록 준용규정을 신설함. (안 제87조의2)
- 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등을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10조, 제51조, 제72조, 제81조 및 제87조)

##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원”을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0조제1항 중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를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③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시장과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

여 의원에게 배부하고”를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고”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원발의 또는 시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4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 표결로 할 수 있다.
- ②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제5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표결수, 기명투표·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과 찬반의원 성명

제51조제1항 중 “서명 날인”을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학예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4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이를 전자회의 단말기에 의한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제2항 중 “종합심사케”를 “종합심사하게”로 한다.

제7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우선한다.
- ③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1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같은 조 제4호 “음식물의 섭취와 껌연”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 없는”을 “관계없는”으로, 제4호 “음식물의 섭취나 꺾연행위”를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제5호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를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로,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준용) 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제82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무처장”은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 제51조, 제72조, 제81조,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개정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 ----- ----- ----- -----.</p>
<p>제2조(등록)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조(등록) <u>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u>----- -----.</p>
<p>제3조(의석배정) ① <u>의원의 의석</u>은 <u>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이 <u>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u>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생략)</p>	<p>제3조(의석배정) ①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u>&lt;단서 신설&gt;</u></p>	<p>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 ----- -----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p>	<p>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 ----- -----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p> <p>③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시장과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고-----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의3(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원발의 또는 시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안
<p>제33조(발언의 허가) ① <u>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② ~ ⑥ (생략)</p> <p>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p> <p>제46조(표결방법) ① <u>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u></p> <p>② <u>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u></p> <p>③ ~ ④ (생략)</p>	<p>제33조(발언의 허가) ① <u>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 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나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44조(표결의 참가) ----- ----- ----- ----- -----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p> <p>제46조(표결방법) ① <u>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u></p> <p>② <u>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p> <p>1. ~ 10. (생략)</p> <p>11. <u>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u></p> <p>12. ~ 14. (생략)</p> <p>② (생략)</p>	<p>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표결수, 기명투표·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과 찬반의원 성명</u></p> <p>12. ~ 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u>서명</u>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u>서명</u> 날인한다.</p> <p>② (생략)</p>	<p>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 기명 날인 또는 서명 ----- --- 기명날인 또는 서명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u>기타</u>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u>교육·학예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다만, <u>교육·학예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나 대안 등은 제출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 -----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u>&lt;단서 삭제&gt;</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u>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u>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p>	<p>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이를 전자회의 단말기에 의한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제공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72조(결산의 심사) ① (생략)</p> <p>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p> <p>③ (생략)</p>	<p>제72조(결산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종합심사하게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3조의2(시정질문) ① (생략)</p> <p>②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중 한가지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p> <p>③ 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이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우선한다.</p> <p>④ ~ ⑦ (생략)</p>	<p>제73조의2(시정질문)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우선한다.</p> <p>③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li> <li>3. (생략)</li> <li>4. <u>음식물의 섭취와 껌연</u></li> <li>5. (생략)</li> <li>6. <u>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u></li> </ol>	<p>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u>그 밖의</u> -----</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u>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u></li> <li>5. (현행과 같음)</li> <li>6. <u>그 밖에</u> ----- -----</li> </ol>
<p>제8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u></li> <li>2. <u>주기가 있는 자</u></li> <li>3. <u>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u></li> <li>4. <u>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u></li> </ol> <p>② ~ ③ (생략)</p>	<p>제86조(방청의 제한)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u></li> <li>2. <u>음주상태에 있는 사람</u></li> </ol> <p>&lt;삭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u>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u></li> </ol>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회의와 <u>관계 없는</u>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li> <li>4. <u>음식물의 섭취나</u> <u>깍연행위</u></li> <li>5. <u>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u></li> <li>6. ~ 7. (생략)</li> <li>8. <u>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u></li> </ol>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li>3. ----- <u>관계없는</u> ----- -----</li> <li>4. <u>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u></li> <li>5. <u>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u></li> <li>6. ~ 7. (현행과 같음)</li> <li>8. <u>그 밖에</u> ----- -----</li> </ol> <p>② <u>의장은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 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다.</u></p> <p>제87조의2(준용) <u>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제82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무처장”은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본다.</u></p>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43조(의회규칙) 제66조(의안의 발의) 제71조(회의규칙)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p> <p>※ 참고 : 국회법</p> <p><input type="checkbox"/>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p> <p><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제33조(발언의 허가) 제44조(표결의 참가) 제46조(표결방법) 제50조(회의록의 작성) 제57조(위원회의 제안)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73조의2(시정질문)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6조(방청의 제한)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 국회법 <참고>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2.3.7>

제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2000.2.16, 2003.2.4, 2005.7.28> [본조신설 1991.5.31]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④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 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3.2.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④ 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

⑤ 의장은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 2005.7.28>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2.4>

⑧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의 질문순서를 질문일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본조신설 1994.6.28]

**제151조(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52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 흥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8.23] [법률 제9705호, 2009. 5.22, 타법개정]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30>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4-10-4> <개정 2008-04-30>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10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04-10-04> <개정 2008-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0.4 규칙 제2478호)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주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04-30]

제33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삭제 2006-10-23>

⑤ <삭제 2006-10-23>

⑥ 시를 방문한 외빈 및 외국명사의 연설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신설 2004.10.4 규칙 제2478호)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6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 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학예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교육·학예 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나 대안 등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72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3조의2(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및 교육 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 중 한가지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이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우선한다.

④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8-04-30>

⑦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 질문 시간 48시간 전(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시장·교육감에 대한 서면질문)** <개정 2008-04-30> ① 의원이 시장·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교육감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8-04-30>

② 시장·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30>

③ 제2항의 답변에 의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깍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3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4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끼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